

## 부산직할시남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1994년 3월 16일

사회산업 위원회

### 1. 심사 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3월 8일 남구청장 제출
- 나. 회부 일자 : 1994년 3월 8일 회부
- 다. 상정 일자 : 제3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1994년 3월 15일) 상정 의결

###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사회산업국장 이영환)

#### 가. 제안 이유

폐기물 무단 투기 근절 및 분리 수거 철저 이행으로 폐기물 배출의 준법 정신을 계도하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나. 주요 골자

- 폐기물 관리법 제7조의 규정 위반한자의 과태료 부과 금액이 최소 10,000 원이던 것을 2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로 과태료 부과 상향 조정
- 일반폐기물 종류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지 않는자의 과태료가 최소 300,000원이던 것을 400,000원으로 상향 조정
- 폐기물 배출자가 보관 시설 용기 부적합으로 개선 대책 명령 등을 받고 불이행할 시 최소 20,000 이던 것을 50,000 상향 조정되었음.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전영수)

- 폐기물 관리법 제7조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폐기물 량에 따라 10,000원에서 50,000원까지 부과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무단 투기 기구, 폐기물의 종류 차량 손수례등의 장비 이용 종류에 따라 2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상향 조정되었으며,
-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 상향 조정되었음.
- 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규정에 부적합하다고 폐기물 배출자에게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으나 조치 명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상향 조정되었으므로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 환경 및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이 제정되었으므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폐기물 무단 투기 방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4. 질의, 답변 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박병화 위원	사회산업 국장 이영환	○ 과태료 부과 금액 상향 조정 근거는?	○ 각구에서 시에, 시는 환경처에 건의하여 시달된 준칙에 의거 조정되었음.
최진동 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반 사례를 단속 및 계도 대책은?</li> <li>○ 쓰레기 투기 단속을 위해 단속요원 구성 및 활동에 따른 수당 등 예산 편성 계획은 없는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회의, 반상회 등을 통하여 주민 홍보 및 단속반 활동을 강화하고 시와 협조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겠음.</li> <li>○ 충분히 검토해서 건의해 보겠음.</li> </ul>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정호기 위 원	사회산업 국 장 이 영환	○ 폐기물 분리종류 및 보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설명을?	○ 일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수집, 운반이 쉽게 만들어져야 하고 음식물류는 악취가 발산되거나 파리, 모기등의 해충이 서식하지 않아야 하며, 다량 배출자의 것은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옥외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경우에는 빗물, 지표수등이 스며들지 않아야 함.
박병화 위 원	"	○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 조정하지 않고 무단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 선량한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주민들의 협조 하에 잘 운용하면 무단 투기 를 현저히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함.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